

「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7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」 전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존 지침을 법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도모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졸음쉼터의 화장실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함.
- 나. 운전자가 다음 졸음쉼터의 명칭, 이격 거리, 편의시설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보조표지판 설치하도록 함.
- 다.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규모 중형 이상에는 화물주차 1면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
- 라.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따라 설치하도록 함.
- 마. 기존 지침을 법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4.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
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
(전화 044-201-3910, 3915, 팩스 : 044-201-5591)

4. 그 밖의 사항

-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